

	정년보장교원 임용 규정		문서번호		1-0-2	
	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	개정일		2020. 11. 01.	
	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제40조 2의3호에 의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정년보장교원 임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)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교수
2. 정교수로 임용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수

②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의 수는 정관 제40조 3항에 의한 정년보장교원 정수 및 대학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.

제3조(제출서류) 제2조가 규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로서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을 원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년보장교원 임용예정일 4월 이전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년보장교원 임용신청서
2. 1호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표와 실적물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4조(정년보장교원 심사절차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의 심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.

②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대한 심사절차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시행세칙 [별표 1]에 의한다.

제5조(정년보장교원 심사기준)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의 심사는 제2조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당해 연도 직급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.

교원업적평가는 매 학년도별 평균 80점 이상(득점을 평점으로 환산한 점수)

2. 연구 실적은 평가기준에 의한 인정점수의 합계가 400% 이상(SCI급 100%이상포함)
3. 교육관계법령과 대학 제 규정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
4. 대학발전부문가산점으로 부여한다. 가산점 항목은 SCI급이상 및 한국연구재단(KCI급) 전문학술지의 책임저자 또는 대학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, 대학발전 부문의 기여도 실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② 1항이 충족하였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.

1. 징계처분, 직위해제, 휴직중인 경우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	정년보장교원 임용 규정		문서번호	1-0-2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2/3	관리 부서 교무처

3. 학교운영발전 전반에 저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전공교과 교수외의 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정년보장교원의 임용제청) ① 제2조 2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5조가 충족하고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을 한다.

② 총장은 정년보장 교수의 적정인원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인원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교원
2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원

제7조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제5조 1항을 심사한다.

- ② 실적물에 대한 질적 심사 및 교원품위의 정성적 심사를 한다.
- ③ 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정년보장교원 임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교원 임용 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당연 면직 해당자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, 교육공무원법,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정년보장교원 임용 규정	문서번호	1-0-2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단, 본 규정 제20조 1항의 3호의 시행은 규정 개정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.
2. (경과조치) 임용일 변경에 따라 규정변경이전의 승진임용 된 교원의 임용일을 4월 1일은 3월 1일로, 10월 1일은 9월 1일로 인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